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훈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 제5조(정관)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제7조(임원)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중 ‘대통령령’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‘공단의 정관’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5.12.5.~'26.1.14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없음

- 규제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. 2. 12.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임원)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”란 기획재정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교육부·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.	<삭 제>
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,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.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74